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백승아·김문수·문정복
박은정·강경숙·최민희
진성준·박지원·허영
진선미·김윤·이재강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,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,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

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1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”를 “다음”으로, “해당하는”을 “해당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”를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(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의2(결격사유) ① 「<u>국가공무원법</u>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</u>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「<u>국가공무원법</u>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</p>	<p>제31조의2(결격사유) ① <u>다음</u>----- -----<u>해당되는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국가공무원법</u>」 제33조 각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</p> <p>2. 「<u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</u>」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</u></p> <p>② ----- <u>제1항</u>----- -----.</p>